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방보조금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미비점 보완 등 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3.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통지(안 제4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보조금 교부 시, 예산 또는 예산안을 회계별·사업별로 구분하여 통지하도록 의무 규정

나. 실적보고 제출기한 위반 시 지방보조금 삭감기준 및 제출기한 연장
(안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제3항 신설)

실적보고서 제출기한 위반 시 지연 기간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 삭감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하고, 정산보고서의 검증이 기한 내에 완료되기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개월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다.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및 감사보고서 작성·제출(안 제11조제2항·제3항 및 제11조의2 신설)

1)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 계약을 체결한 즉시 감사인 선정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의무 규정

2)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위하여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일 이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라. 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의무(안 제11조의3 신설)

지방보조금 총액 5백만원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정보공시 의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할 경우, 지방보조금 삭감기준 마련

마.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안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5항 신설 등)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유별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제한기준을 마련하고, 다른 지방보조사업자로 대체가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수행배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

바. 지방보조금의 예치 및 교부 등(안 제5의2 신설)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위하여 지방보조사업자가 통합관리망에 등록해야 하는 증빙자료의 내용을 규정하고,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에 예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규정

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및 자료·정보의 제공 요청 등(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신설)

- 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및 결정, 집행 및 사후관리 등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업무를 통합관리망을 통해 수행하도록 규정
- 2)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와 그 제공 방법 등을 규정하고, 금융·신
용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의 장이 제공하여야 하는 정
보의 내용 등을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0. 25. ~ 12. 5.)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거하여”를 “명시적 근거가 있어”로, “경우 그”를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경비에 한하여”로,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비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의2 및 제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회계별·사업별로 구분된 예산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의2(지방보조금의 예치 및 교부방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예치하여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조금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보조금을 예치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자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치하여 교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보조금의 경우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집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예치된 지방보조금을 요청할 경우에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행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등록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2. 지방보조금의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거래승인내역
3.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집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④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집행을 위해 증빙자료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을 요청

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 :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삭감

2.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 :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삭감

3. 12개월 이상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 :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삭감

제10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간 내에 검증보고서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정하는 경우 해당 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체결한 즉시 그 선정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직전 감사 사업연도에 선정한 감사인과 동일한 자를 감사인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2. 해당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법인등기부등본(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감사인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감사인을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감사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감사 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3.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사항

② 감사인은 감사 결과를 기술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1조제4항의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전까지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 공시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이란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을 말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시대상 규모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교부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법 제10조의 교부 결정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

2. 지방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3.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내용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시하는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지방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시정명령에 1회 불응한 경우 100분의 10 이내 삭감

2. 시정명령에 2회 불응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삭감

3.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100분의 50 이내 삭감

제1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요재산의 취득에 사용된 사업비 중 지방보조금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및 결정, 지방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보조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

③ 법 제2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방보조금을 교부, 집행 및 정산하는 사업의 단위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사업의 유사·중복 여부의 검증 및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단위별 정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제4호가목 및 바목과 같은 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는 별표 1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 또는 정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과 해당 자료 또는 정보 관련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제16조의4(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

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1.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범위, 조회 기준일 및 조회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내용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의5(5년 초과 보유대상 자료 또는 정보) 법 제28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보조금 중복·부정 수급 여부 확인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법 제1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법 제21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처분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법 제30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 법 제32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와 지방보조금의 교부제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법 제3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7.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제19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7항”으로, “지방보조사업자등을”을 “지방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계약업체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 중 “지방보조사업자등이”를 “지방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계약업체가”로, “교부 여부”를 “교부 또는 지급 여부”로, “지방보조사업자등의”를

“지방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계약업체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지방보조금의 교부 제한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2조제3항에 다른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 제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부정계약업체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지방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사업
2. 다른 지방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사업

제22조를 제23조로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업무의 위탁) 법 제36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u>근거하여</u>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u>경우 그</u> 운영비로 사용할 수 <u>있는</u>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 4. (생략) <u><신 설></u>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① ----- ----- ----- --- 명시적 근거가 있어 --- ----- <u>경우에도 다음</u> <u>각 호의 경비에 한하여</u> ----- ----- 있다. <단서 삭제> 1. ~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비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u>제4조의2(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통지)</u>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u><신 설></u>	

<신 설>

계 회계별·사업별로 구분된 예산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의2(지방보조금의 예치 및 교부방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예치하여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조금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보조금을 예치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자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치하여 교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보조금의 경우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

금의 집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예치된 지방보조금을 요청할 경우에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행과 관련된 증빙 자료를 등록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2. 지방보조금의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거래승인내역

3.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집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④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집행을 위해 증빙자료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을 요청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① ~ ③ (생략)

<신설>

제10조(실적보고서의 검증) ① (생략)

<신설>

제9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 :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삭감

2.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 :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삭감

3. 12개월 이상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 : 해당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삭감

제10조(실적보고서의 검증)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정산보고서의 적

<신 설>

② (생 략)

제11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① (생 략)

<신 설>

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간 내에 검증보고서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1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정하는 경우 해당 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체결한 즉시 그 선정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직전 감사 사업연도에 선정한 감사인과 동일한 자를 감사인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신 설>

② ~ ⑤ (생 략)

<신 설>

2. 해당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법인등기부등본(특정지방보조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지
방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감사인을 선정하지 않
은 경우에는 해당 특정지방보조
사업자에게 감사인을 선정할 것
을 요구할 수 있다.

④ ~ ⑦ (현행 제2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

제11조의2(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감사보고서
의 작성을 위하여 감사 대상 사
업연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
산서

3.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사항

<신 설>

② 감사인은 감사 결과를 기술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1조제4항의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전까지 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 공시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이란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을 말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시대상 규모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

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교부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법 제10
조의 교부 결정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감사보고서 또
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
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
야 한다.

③ 법 제20조의2제1항제5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해당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
고서에 대한 검증결과
2. 지방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3.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투
명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
0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
는 경우 시정명령의 내용 및 기
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
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제13조(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란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시하는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지방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시정명령에 1회 불응한 경우
100분의 10 이내 삭감
2. 시정명령에 2회 불응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삭감
3.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100분의 50 이내 삭감

제13조(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

----. 다만, 중요재산의 취득에 사용된 사업비 중 지방보조금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의2(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

8조에 따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및 결정, 지방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보조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

③ 법 제2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방보조금을 교부, 집행 및 정산하는 사업의 단위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사업의 유사·중복 여부의 검증 및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단위별 정보에 관한

<신 설>

사항을 말한다.

제1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 제4호가목 및 바목과 같은 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는 별표 1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 또는 정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과 해당 자료 또는 정보 관련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의4(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1.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범위, 조회 기준일 및 조회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지방보조사

<신 설>

업자등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
좌번호

4.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내용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금융기관등의 장에
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 제28
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 또
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제16조의5(5년 초과 보유대상 자
료 또는 정보) 법 제28조의5제1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
다.

1. 지방보조금 중복·부정 수급
여부 확인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법 제12조에 따른 지방보조

	<u>금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u> 3. <u>법 제21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처분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u> 4. <u>법 제30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u> 5. <u>법 제32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와 지방보조금의 교부제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u> 6. <u>법 제3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u> 7. <u>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u>
제19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 <u><신 설></u> <u><신 설></u>	제19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u>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 및 지방보조금의 교부 제한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u> ② <u>법 제32조제3항에 다른 지방</u>

<신 설>

1. 다른 지방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사업
2. 다른 지방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지방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이 제한된 <u>지방보조사업자등</u>이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지방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u>교부 여부</u>를 결정할 때 <u>지방보조사업자등</u>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의 통지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u>제22조 (생략)</u>	<u>치단체의 장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사업</u> ⑥ ----- ----- ----- <u>지방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계약업체가</u> ----- ----- ----- <u>교부 또는 지급 여부-- 지방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계약업체의</u> ----- ----- -----. ⑦ <u>제1항부터 제5항까지</u>----- ----- ----- ----- -----. <u>제22조(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업무의 위탁) 법 제36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말한다.</u> <u>제23조 (현행 제22조와 같음)</u>
---	---

■ [별표 1]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

(제16조의3 관련)

구분	요청 자료 또는 정보
법 제28조의2 제1항제4 호가목 관련	1. 「부가가치세법」 제55조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2.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3.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4.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5.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6.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자료
법 제28조의2 제1항제4 호바목 관련	1.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른 취득세 과세자료
	2.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세 과세자료
법 제28조의2 제1항제6 호 관련	1. 「고용보험법」 제4조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2. 「고용보험법」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과 관련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3. 「고용보험법」 제21조에 따른 근로자의 휴직정보
	4. 「국가기술자격법」 제7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정보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에 따른 장기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자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지급에 관한 자료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자료
	9.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관한 자료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훈대상자 교육비 지원에 관한 자료
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제대군인 사회복지 지원에 관한 자료
12. 「군인연금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 지급에 관한 자료
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14.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적공부
16.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정보
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자금지원과 관련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정보
19. 「상업등기법」 제2조에 따른 등기기록
20.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자료
21.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지급에 관한 자료
22. 「별정우체국법」 제24조에 따른 장기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2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자료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른 사망자정보
2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정보
26. 「의료급여법」 제3조의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27.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재해유족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 정보

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에 따른 부정당 제재정보
30.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등록정보
31. 「어선법」 제13조에 따른 어선 등록정보
32.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
33. 「주민등록법」 제28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 성명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3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에 관한 자료
3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자료
36.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국민건강 보험료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료
3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38.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55조의2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료
39.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료
4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료
41. 「농지법」 제54조의2에 따른 농지 관련 자료
42.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0조제4항제4호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적기업 정보
43.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된 자료
44. 「여권법」 제23조의2에 따른 여권정보
45.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마이데이터에서 관리하는 자료
46.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7.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8.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별표 2]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및 지방보조금의 교부 제한 기준

(제19조제1항 관련)

처분사유	근거 법조문	수행 대상 배제 기간 또는 교부 제한 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법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법 제32조제1항 제1호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법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법 제32조제1항 제2호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3년 이내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법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법 제32조제1항 제3호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2년 이내

비고: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수행 대상 배제 기간 또는 교부 제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별표 3]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 기준

(제19조제3항 관련)

처분사유	근거 법조문	지급 제한 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법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법 제32조제3항 제1호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
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법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법 제32조제3항 제2호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3년 이내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법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법 제32조제3항 제3호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1년 이내

비고: 제2호에 따른 반환명령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이거나, 제3호에 따른 반환명령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지방보조금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지급 제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별표 4] 부정계약업체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기준

(제19조제5항 관련)

처분사유	수행 대상 배제 기간
1.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유죄판결로 1년을 초과하는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
2.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유죄판결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3년 이내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유죄판결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징역형이나 금고형과 병과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2년 이내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연 락 처	(044) 205 - 3735